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호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호, 2022.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제1호의 제목 중 “2022년도”를 “2023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7.640	2000	2.250	2012	1.478
1989	6.755	2001	2.210	2013	1.444
1990	5.882	2002	2.167	2014	1.399
1991	4.917	2003	2.026	2015	1.359
1992	4.267	2004	1.910	2016	1.315
1993	3.778	2005	1.826	2017	1.260
1994	3.327	2006	1.767	2018	1.214
1995	3.072	2007	1.706	2019	1.173
1996	2.817	2008	1.634	2020	1.127
1997	2.547	2009	1.597	2021	1.067
1998	2.270	2010	1.568	2022	1.000
1999	2.217	2011	1.512		

나. 적용대상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제2호 제목 중 “2022년도”를 “2023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률과 적용기간률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5.1% 증액
- 적용기간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5.1% 증액
- 배 우 자 : 연 269,630원 → 연 283,380원 (13,750원 ↑)
- 자녀·부모 : 연 179,710원 → 연 188,870원 (9,160원 ↑)
- 적용기간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1. 2022년도 ----- 가. 재평가율 결정						1. 2023년도 -----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 연도	재 평 가율	재평가 연도	재 평 가율	재평가 연도	재 평 가율	재평가 연도	재 평 가율	재평가 연도	재 평 가율	재평가 연도	재 평 가율
1988	7.161	2000	2.109	2012	1.385	1988	7.640	2000	2.250	2012	1.478
1989	6.331	2001	2.071	2013	1.353	1989	6.755	2001	2.210	2013	1.444
1990	5.513	2002	2.031	2014	1.312	1990	5.882	2002	2.167	2014	1.399
1991	4.609	2003	1.899	2015	1.274	1991	4.917	2003	2.026	2015	1.359
1992	3.999	2004	1.790	2016	1.232	1992	4.267	2004	1.910	2016	1.315
1993	3.541	2005	1.712	2017	1.181	1993	3.778	2005	1.826	2017	1.260
1994	3.119	2006	1.656	2018	1.138	1994	3.327	2006	1.767	2018	1.214
1995	2.880	2007	1.599	2019	1.100	1995	3.072	2007	1.706	2019	1.173
1996	2.641	2008	1.532	2020	1.056	1996	2.817	2008	1.634	2020	1.127
1997	2.388	2009	1.497	2021	1.000	1997	2.547	2009	1.597	2021	1.067
1998	2.127	2010	1.470			1998	2.270	2010	1.568	2022	1.000
1999	2.078	2011	1.418			1999	2.217	2011	1.512		
나. 적용대상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						나. 적용대상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					
2. 2022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2.5% ---- ○ 적용기간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적용						2. 2023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5.1% ---- ○ 적용기간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2.5% ---- - 배 우 자 : 연 263,060원 → 연 269,630원 (6,570원 ↑)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연 179,710원 (4,380원 ↑) ○ 적용기간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5.1% ---- - 배 우 자 : 연 269,630원 → 연 283,380원 (13,750원 ↑) - 자녀·부모 : 연 179,710원 → 연 188,870원 (9,160원 ↑) ○ 적용기간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					